

성폭력은 매우 심각한 범죄이다.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심하고 후유증이 장기 지속되는 경향이 있다. 이런 경우 사람마다 각각 다른 방법으로 반응을 하기 때문에 필요한 도움도 서로 다르다.

성범죄를 신고했든 하지 않았든 성폭력 피해자일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심리적인 도움은 물론,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전문 기관들이 인근에 있다. 인근에 어떤 기관들이 있는지 피해자 정보 라인(0800 650 654)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 안내서는 성폭력 피해자가 범죄에 대해 신고하면 어떻게 되며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한다.

이 안내서 끝 부분에 있는 '주요 문의처' 및 '용어설명'을 참조한다.

## 범죄 피해자의 권리

범죄 피해자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는 서비스, 본인 관련 법정 사건의 진행 과정, 그리고 법정에 가면 어떤 일이 있게 될 것인지에 대해 설명을 들을 권리가 있다.

또한 범죄가 피해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법정에서 진술할 권리가 있다. 미성년자에 의한 성폭력 피해자인 경우에는 가족 그룹 회의에 참석해 범죄자 처벌에 관한 본인의 의향을 말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 피해자 본인이나 대리인은 범죄자의 이름 비공개, 보석, 가택 연금이나 가석방 등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피해자는 법원직원, 경찰, 사건과 관련된 타인으로부터 예의를 갖춘 성의있고 정중한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권리도 가지고 있다.

피해자의 권리와 대우에 관한 추가 정보는 피해자 현장(Victims Code)을 참조한다. 본 웹사이트 ([victimsinfo.govt.nz](http://victimsinfo.govt.nz))에는 이러한 정보 외에 기타 유용한 정보도 들어 있다.

피해자의 권리가 침해되었거나, 서비스가 수준 이하라고 생각되면 민원을 제출할 수 있다. [www.victimsinfo.govt.nz](http://www.victimsinfo.govt.nz)을 방문하거나 피해자 정보 라인(0800 650 654)으로 전화하면 된다.

## 범죄의 신고

최근에 성폭력을 당했거나 현재 신변에 위험을 느끼는 경우에는 111로 전화하여 경찰에 신고하면 된다.

얼마 전에, 심지어 수년 전에 당한 성폭력이라도 지금 신고할 수 있다. 경찰에 성폭력 범죄를 신고하는 데는 시한이 없다. 과거에 당한 성폭력에 대해 신고하고자 할 경우에는 인근 경찰서에 전화한 후 형사(detective)와 통화하고 싶다고 말하면 된다. 범죄 신고를 하러 갈 때는 지원인과 함께 가도 된다.

경찰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피해자의 신변 안전이다. 성폭력에 대해 신고를 하면 이 사건을 담당하는 경찰관이 배정된다. 사건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언제라도 담당 경찰관에게 문의할 수 있다.

경찰은 또한 피해자를 전문 위기처리 기관이나 피해자 지원단체와 연결시켜 주고, 이 기관들은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 것인지에 대해 이야기해 준다. 전문 위기처리 기관 직원은 성폭력 피해자를 돕기 위해 특별히 훈련된 요원으로 수사 과정 및 법원의 사건처리 전 과정을 통해 피해자를 도와준다.

피해자 정보라인(0800 650 654)으로 전화해 인근에 다른 지원기관이 있는지 알아보면 된다.

## 사건 수사

성범죄 수사는 철저히 실시하며 경찰은 사건과 관련된 증거를 가능한 많이 수집하기 위해 노력한다. 특별히 교육을 받은 경찰관이 피해자와 인터뷰를 할 것이며, 사건의 전모를 자세히 파악하기 위해 몇 번에 걸쳐 인터뷰를 할 수도 있다. 여성(또는 남성) 경찰관과 인터뷰하게 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수사의 한 과정으로 피해자에게 신체검사를 하라고 요청할 수도 있다. 이 요청에 응할 것인지 여부는 본인에게 달려 있다. 성폭력 피해자를 검진하는 전문 교육을 받은 의사가 신체검사를 하게 된다. 이 신체검사는 사건에 관한 중요한 증거를 제공한다. 원하면 언제나 지원인이 동행할 수 있다.

수사하는 동안 경찰은 범죄에 대해 알고 있는 다른 사람들과 대담할 수 있고, 사진촬영, 법의학 검사 등 증거를 수집할 수 있다. 증거가 충분하다고 생각되면 용의자를 체포한 후 형사 범죄 혐의로 기소한다.

## 보석

용의자가 체포된 경우 그 사람은 법정에 출두할 때까지 석방될 수 있다. 이것을 보석이라 부른다. 때때로 그 사람의 거주지에 관한 제약이 있을 수 있고, 통행금지 조건이 부여될 수도 있다. 용의자가 피해자나 지역사회에 타인에게 위협하다고 생각되면 경찰은 용의자가 법정에 출두할 때까지 그를 구금할 수 있고, 용의자는 법정 출두 시에 다시 보석을 신청할 수 있다.

피해자는 범죄자를 보석으로 석방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그 결과에 대한 통보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선고 후에 범죄자에게 일어나는 일에 관한 통보를 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 통지 등록부에 본인의 인적사항을 등록할 수 있다. 등록된 피해자의 인적사항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된다. 원하면 본인을 대신해서 타인이 이 통보를 받도록 할 수 있다.

## 피해자 영향 진술서

피해자 영향 진술서(victim impact statement)를 작성하기 원하는지 피해자에게 질문을 한다. 이는 범죄가 피해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관해 법원에 이야기하는 진술서다. 사건 담당 경찰관, 피해자 지원단체 혹은 다른 지원 기관의 도움을 받아 이 진술서를 작성할 수 있다. 이 안내서의 '판결 및 선고' 항목에 피해자 영향 진술서에 관한 추가 설명이 있다.

수사를 아무리 철저히 하더라도 체포할 수 있을 정도로 증거가 충분하지 않거나, 혐의자를 기소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그렇다고 피해자의 신고 내용을 불신한다는 뜻은 아니다.

## 피해자 지원

사건의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피해자는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심리적인 도움이나 보험 청구 등에 관한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하면 피해자 지원단체(0800 842 846)에 문의하면 된다. 또는 피해자 정보 라인(0800 650 654)으로 전화하여 가까운 곳에 있는 다른 지원 기관에 관해 알아보면 된다.

## 청소년 범죄

17세 미만의 청소년에 의한 범죄 사건은 청소년 사법 절차를 통해 처리된다. 범죄 피해자는 청소년 사법 절차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며 가족 그룹회의에 참석할 권리를 가진다.

아동청소년가족복지부(CYF)나 법원으로 문의하면 관련된 다양한 자료와 청소년 사법 제도에 관한 자료를 구할 수 있다. 아동청소년가족복지부의 가족그룹회의 조정관이 범죄 피해자에게 연락을 취한다.

## 재정 지원

범죄와 관련된 일부 비용의 보상금 조로 정부에 재정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신청 방법은 어떤지 알기 원하면 피해자 지원단체(0800 842 846)에 문의하면 된다.

- 성폭력 피해자는 잠금 장치 수리, 의류 교체, 임시 숙소 등 성폭력의 결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보상금 조로 최고 \$500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 성폭력 피해자 및 무보수 지원인은 법정 소송 심리에 출석하는 경우 1일 \$100(반일의 경우, \$50)의 법정 출석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아동 피해자를 대신해 출석하는 보호자 및 아동의 지원인도 법정 출석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 법정 또는 가석방 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하는 중범죄 피해자(성폭력 피해자 포함) 및 무보수 지원인은 여행비, 숙박비, 관련 경비 조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 커뮤니티 서비스 카드 신청 자격이 되는 피해자는 최고 \$2,000의 긴급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ACC에서 지급하는 다른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지원 기관에 문의하거나 ACC 민감 사안 헬프라인 0800 735 566으로 문의하면 된다.

## 법정 내에서

피고(범죄로 기소된 사람)는 법정에 몇 차례 출두해야 할 경우가 흔하다. 유죄 시인(guilty)이나 무죄 주장(not guilty)을 하기 위한 법정, 판사가 사건의 증거를 심리하는 법정 등에 출두해야 한다. 피해자가 이러한 법정에서 모두 참석해야 할 경우는 드물다. 하지만 본인이 원하면 참석해도 된다.

피고가 유죄를 시인하면 당일에 선고를 하거나 선고 공판 일자를 확정한다. 피고가 무죄를 주장하면 이 사건을 추후 공판에 회부한다.

법정에서는 검찰이 배심원과 판사 앞에서 논고를 한다. 검찰은 정부를 대변하며, 국가, 경찰 및 일반 국민을 대신하여 논고를 하게 된다. 피해자는 피고의 범죄를 입증하는 검찰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법정 증언을 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증인의 역할' 참조).

검찰은 피해자와 만나 어떤 혐의로 용의자를 기소할 것이며, 그 이유는 무엇이며, 법정에서 어떤 일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 설명해 준다.

성폭력 사건의 경우, 언론은 피해자의 이름이나 인적사항 등을 전혀 밝히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청각 장애, 기동 장애, 언어 장벽 등으로 도움이 필요할 경우, 성폭력 피해자 자문관이나 담당 경찰관 또는 개인 지원인에게 이야기하면 된다.

무엇보다 피해자의 안전이 중요하다. 법정에서 신변 안전이 우려될 경우 언제라도 경찰관이나 법원 안전 담당관에게 이야기하면 된다.

### 성폭력 피해자 자문관

성폭력 피해자는 성폭력과 관련해 일을 한 경험이 풍부한 전문 피해자 자문관의 서비스를 받는다.

성폭력 피해자 자문관은 법원 절차에 관해 설명해 주고, 어떤 일이 언제, 어떻게 처리되며, 범죄자가 언제 법정에 출두하게 되는지 설명해 준다. 또한 피해자에게 알맞은 개인적인 도움을 받도록 주선해 준다.

자세한 내용은 피해자 정보라인(0800 650 654)으로 문의한다.

## 증인의 역할

피해자는 증인으로 출두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 증인이 되면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다. 검찰, 담당 경찰관, 성폭력 피해자 자문관이 증인으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앞으로 어떤 일이 있게 될 것인지 설명해 준다.

### 법정이 열리기 전

담당 경찰관이나 성폭력 피해자 자문관이 언제, 어느 법정에 출두하라고 말해 준다. 공식적인 증인 출두 요청서도 집으로 배달된다.

증인으로서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에 관해 검찰이 설명해 준다. 증언할 법정에 미리 들어가 보도록 안내를 부탁할 수 있다. 성폭력 피해자 자문관, 담당 경찰관 또는 지원인에게 이의 주선을 요청하면 된다.

그 외에도 성폭력 피해자 자문관이나 담당 경찰관에게 다음과 같은 일을 부탁할 수 있다:

- 법원 청사 내외에서 안내할 사람과 만나는 일의 주선
- 피해자가 증언을 할 때 지원인이 함께 앉아 있도록 주선
- 증언할 때 피고를 바라보지 않도록 스크린으로 막거나 폐쇄회로 TV 이용의 주선(가능할 경우).

### 법정 내에서

성폭력 피해자가 증언을 할 때 법정은 '비공개'로 진행된다. 일반 대중은 법정에서 들어 올 수 없게 된다는 뜻이다. 피해자에게 어떤 일이 있었으며 범죄에 관해 아는 바가 무엇인지 질문을 받는다.

대부분의 법원에는 증인을 위한 별도의 대기실이 있다. 하지만 피해자는 피고의 가족 및 친구들을 법원 청사 내외에 만날 가능성이 있다.

증언하는 당일은 물론 그 전에도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적절한 도움을 받는 것에 관해 성폭력 피해자 자문관이나 지원인에게 문의한다.

## 판결 및 선고

공판이 끝날 무렵 피고가 유죄인지 무죄인지가 결정된다. 배심원들의 의견이 나뉘어 결론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또 한번의 공판이 있을 수 있다.

피고에게 무죄가 결정되었다고 해서 피해자의 증언이 허위로 해석되지는 않는다. 법과 증거에 근거한 재판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일단 무죄로 인정되면 피고는 무죄 선고를 받고 자유의 몸이 된다. 이와 같은 예상치 않은 결과가 나오면 피해자는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다. 그런 경우 성폭력 피해자 자문관이나 지원인과 이야기를 나누면 된다.

피고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 당일 선고를 하거나 선고 공판 일자를 확정한다.

### 회복적 사법

회복적 사법 회의(restorative justice conference)란 피해자, 범죄자, 지원인 및 지역사회 대표나 통역사 등 다른 인정된 사람이 참석하는 비공식으로 주선되는 회의이다.

회복적 사법은 범죄가 피해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피해 복구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 피해자가 범죄자에게 의견을 말하고, 범죄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하는 제도이다.

사건을 회복적 사법 절차에 회부하려면 먼저 용의자가 유죄를 시인하거나 혐의가 유죄로 확정되어야 하고, 범죄자와 피해자가 모두 참석하기로 동의해야 한다.

회복적 사법에 관해 더 알기 원하면 성폭력 피해자 자문관에게 문의하거나 [justice.govt.nz/restorative-justice](http://justice.govt.nz/restorative-justice)을 참조한다.

### 선고

판사는 유사 범죄에 관한 이전의 판례, 범죄자에 관한 보고서 등 여러 가지를 참조하도록 법에서 요구한다.

판사가 동의하면 피해자(또는 피해자가 지정한 사람)가 선고 공판에서 피해자 영향 진술서의 일부 또는 전부를 낭독할 수 있다. 그렇게 하기 원하면 성폭력 피해자 자문관이나 담당 경찰관에게 부탁하여 피해자를 대신해 판사에게 요청한다. 판사가 범죄자에 대한 선고를 할 때는 피해자 영향 진술서를 고려하도록 되어 있다.

## 피해자 보상금

피해자가 범죄로 인해 부상을 당했거나 재산 망실이나 손상을 입은 경우, 판사는 때때로 피해자 앞으로 금전(이를 "보상금"이라 한다)을 지불하도록 범죄자에게 명령한다. 피해자 보상금을 수령하는 가장 좋은 방법을 주선하려면 법원 (0800 909 909)으로 전화한다.

## 항소

검찰과 범죄자는 둘 다 판결 및 선고에 불복하고 항소를 할 수 있다. 이는 상급 법원이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요청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럴 경우 검찰은 항후 절차에 관해 피해자에게 알려 준다.

## 재판 후

일단 유죄가 확정되면 범죄자는 선고를 받게 된다. 선고의 내용을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 담당 경찰관이나 성폭력 피해자 자문관에게 문의하면 선고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준다.

## 출옥

범죄자는 일정 복역 기간이 지난 후 가석방 되거나 형 만기에 출옥된다. 출옥은 피해자가 예상한 것 보다 조기일 수 있다. 유죄가 확정되고 선고를 받는 동안 감금되어 있던 기간도 복역 기간으로 인정되기 때문이다.

형 만기가 되면 범죄자는 반드시 출옥되어야 한다. 복역 기간이 끝난 후 범죄자를 옥에 감금해 둘 수 없다.

복역 기간이 지나기 전에 가석방이 허락되면 범죄자는 출옥될 수 있다. 뉴질랜드 가석방 위원회는 대부분의 범죄자 사건을 심리하고 범죄자의 조기 석방이 지역사회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지 않을 것인지 여부를 결정한다.

가석방으로 출옥되는 범죄자는 흔히 출옥 후 최소 6개월 동안 지켜야 할 특정 조건을 부여 받는다. 이 조건은 가석방 위원회 또는 해당 범죄자에게 선고를 한 판사가 결정한다. 조건에는 피해자의 거주장소, 접촉자, 통행금지 시간 및 지역사회 보호에 도움이 될만한 다른 사항이 포함될 수 있다.

## 피해자는 가석방 위원회의 가석방 결정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피해자가 범죄자의 조기 출옥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려면 피해자 통지 등록부에 인적사항을 등록해 가석방 위원회 청문회가 소집될 때마다 본인에게 연락이 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등록부에 기재된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정정하기 원하면 경찰, 교정부 또는 지원기관에 연락하면 된다.

가석방 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하는 방법에는 서면, 화상통화 또는 청문회 직접 참석이 있다.

## • 서면이나 화상통화

가석방 위원회 담당관과 통화한다.

## • 직접 참석

가석방 위원회들과 직접 만난다. 항후 범죄자를 보게 될 가석방 위원들 앞에서 의견을 발표하지만 이 청문회는 형무소에서 개최되지 않고 범죄자도 참석하지 않는다. 이 청문회에는 지원인과 함께 참석할 수 있다.

## 주요 문의처

형사 사법절차의 어떤 단계에 있는 피해자는 범죄로 인한 피해를 극복하는 데 필요한 개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범죄 피해자 본인 및 다른 피해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요 기관의 연락처가 있다. 서비스에 관한 추가 정보는 월-금, 오전 9시-오후 6시 사이에 피해자 정보 라인 (0800 650 654)을 이용해 문의하거나 [victimsinfo.govt.nz](http://victimsinfo.govt.nz)를 참조한다.

### ACC

[acc.co.nz](http://acc.co.nz)

0800 735 566 민감 사안 헬프라인(성폭력 피해자용)

### 교정부

04 460 3000

[corrections.govt.nz](http://corrections.govt.nz)

### 뉴질랜드 가석방 위원회

0800 PAROLE(727 653)

[paroleboard.govt.nz](http://paroleboard.govt.nz)

### 개인 지원 기관

[victimsinfo.govt.nz](http://victimsinfo.govt.nz)를 참조하거나, 전화번호부의 개인 지원 서비스(personal help service) 난 참조

### 경찰

[police.govt.nz](http://police.govt.nz)에서 인근 경찰서를 찾거나, 전화번호부 맨 앞쪽 청색페이지 참조

### 성폭력 피해자 자문관 및 법원 피해자 자문관

0800 650 654(피해자 정보라인)

### 피해자 지원단체

0800 VICTIM (842 846) 1일 24시간 운영

[victimsupport.org.nz](http://victimsupport.org.nz)

### 여성 피난소

0800 REFUGE (733 843), 1일 24시간 운영

[womensrefuge.org.nz](http://womensrefuge.org.nz)

### 랭귀지 라인 통역 서비스

0800 656 656

월-금요일 오전 9시-오후 6시, 토요일 오전 9시- 오후 2시

## 용어 설명

### 보석(Bail)

경찰이 향후 법정 출두 조건으로 범죄 혐의로 기소된 사람을 석방하는 행위.

### 피고(Defendant)

범죄로 기소된 사람.

### 살인

어떤 사람이 타인을 살해하는 행위.

### 범죄자(Offender)

혐의에 대한 유죄가 확정된 사람. (유죄가 확정되기 전에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을 '피고'라 부른다.)

### 가석방(Parole)

범죄자가 출옥을 허락 받아 지역사회에서 남은 복역 기간을 채워야 하는 경우.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일정 조건이 부여된다.

### 회복적 사법(Restorative Justice)

범죄가 피해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피해 복구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 피해자가 범죄자에게 의견을 말하고, 범죄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하는 제도. 이를 위해 주선되는 모임을 회복적 사법 회의라 부른다.

### 중범죄(Serious crime)

- 성폭력이나 기타 강력 폭행죄.
- 중상이나 사망을 초래한 범죄.
- 피해자 본인 및 직계 가족 중 어느 누구의 신변 안전에 위험이 커 지속적인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범죄.

### 성폭력 피해자 자문관

성폭력에 관한 교육을 받고 이 분야에 경험이 많은 법무부의 직원. 이 직원은 피해자에게 법원 절차 및 사건의 진행 과정에 대해 설명해 준다.

### 피해자 통지 등록부(Victim Notification Register)

형사 사법 기관에서 사용하는 비밀 목록으로 이를 이용해 범죄 피해자에게 범죄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예를 들면 해당 사건의 사법절차 진행 정도, 범죄자의 일시적인 출옥, 범죄자의 가석방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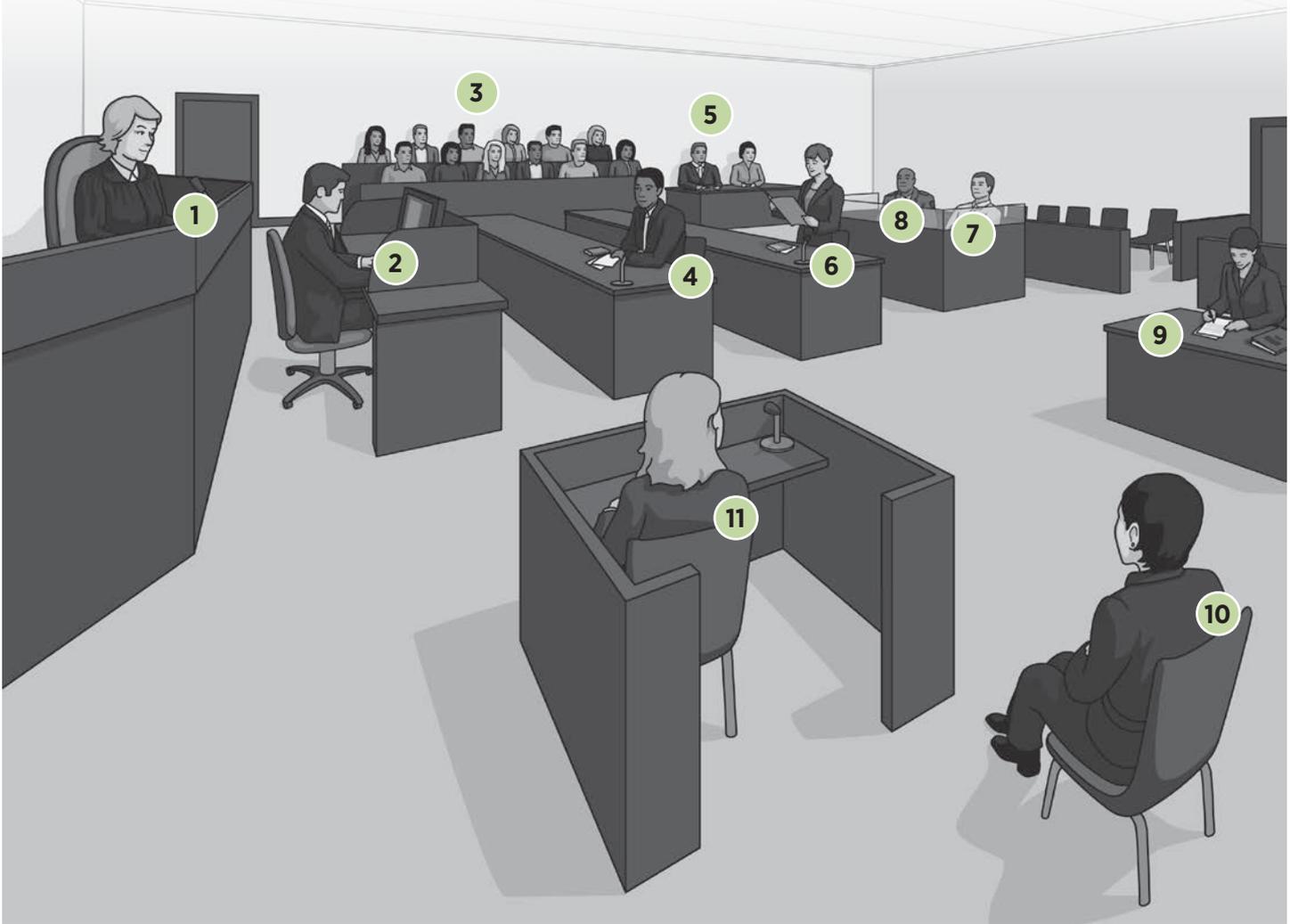
담당 경찰관에게 의뢰하여 피해자 인적사항을 등록부에 등록할 수 있다.

### 피해자 영향 진술서(Victim impact statement)

범죄가 피해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진술서이다. 일반적으로 서면으로 작성하지만 사진, 도면, 시 등을 포함시킬 수 있다. 판사는 범죄자 선고 시에 이 진술서를 반드시 참조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는 법정에서 선고 전에 이 진술서를 낭독할 수 있다.

## 법정 내부

이 도형은 법정 배치의 한 예이며, 어떤 사람들이 참석하나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1. **판사**는 재판을 주관한다. 피고의 유죄 여부를 결정한다. 배심원이 있는 재판의 경우에는 배심원이 유죄 여부를 결정한다.
2. **법원 서기**는 판사가 재판을 하는데 필요한 사무적인 도움을 제공한다.
3. **배심원**은 12명으로 구성되며 피고의 유죄 여부를 결정한다.
4. **검찰**은 국가를 대신해 피고를 상대로 하여 논고를 한다.
5. **언론**은 사건을 취재하는 언론인들이다.
6. **피고 변호사**는 피고를 대변하는 변호사이다.
7. **피고**는 범죄로 인해 기소를 당한 사람이다.
8. **피고 호송인**은 피고를 법원까지 호송하는 사람이다.
9. **성폭력 피해자 자문관**은 증인이 법원 절차를 이해하도록 도와주는 사람이다. 이들이 법정에 항상 배석하지는 않는다.
10. **증인 지원인**은 증인을 지원하기 위해 법원에 동행하는 사람으로 판사가 동의해야 참석할 수 있다.
11. **증인**은 사건 및 범죄에 관한 증언을 하는 사람이다.